

# Clean Business 2016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CLEAN BUSINESS**

**CLEAN SUCCESS**

**CLEAN dōTERRA®**

2016년 5월,

도테라코리아는 회원들의 건전한 사업문화 정착 및 회원들의 고유한 사업권 보호를 위해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 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른 올바른 관심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02일

-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 -

**dōTERRA®**

# Clean Business 2016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I

## [ 온라인 쇼핑몰 / 경매사이트 판매 금지 ]

도테라코리아는 당사를 통하여 IPC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에 한해 당사의 방침 및 절차와 서면으로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방침 및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한 어떠한 홍보 및 판촉행위도 금지합니다.

도테라코리아의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할 경우

- 1) 회원의 경우 당사의 규정에 의거 주문보류, 활동 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 2) 회원이 아닐 경우 당사의 규정과 영업방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의 통보사항을 적극 존중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사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02일

- 도테라코리아 유통강령부 -

dōTERRA®

# Clean Business 2016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II

## [IPC 양도·양수금지 (차명 가입 및 활동 금지)]

양도·양수(차명활동) 행위는 대한민국 실정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또한 도테라코리아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능한 징계 조치

- 1) IPC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경고 또는 훈계 조치
- 2) 특정 기간 동안 IPC의 품행을 면밀히 모니터링
- 3) IPC 보너스 지급 중단
- 3) 계약 불이행 시 IPC 계약 해지 등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항.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테라코리아 방침 및 절차]

제 19조. 상속과 클레임

2항. 판매권 지위 양도 : IPC는 어떠한 경우에도 IPC 포지션 및 포지션과 연계된 모든 혜택과 권리를 다른 개인, 상사 또는 법인에게 매도,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016년 05월 02일

-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 -

dōTERRA®

# Clean Business 2016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III

##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및 상표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자율 시정기간 안내]

현재 SNS 및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의 활동 증가와 함께 제품과 사업 기회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와 상표 및 제품이미지 무단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자율 시정 기간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자율시정 기간 이후 발생하는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비즈니스 운영 및 관련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자율 시정 기간 내 온라인을 포함한 오프라인 상의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자율 시정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공정하고 건전한 사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관심 바랍니다.

자율 시정 기간 : 2016년 5월 2일 ~ 2016년 5월 15일까지(14일간)

자율 시정 활동의 주체 : 도테라코리아 관련 카페 및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주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2016년 05월 02일  
-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 -

dōTERRA®

# Clean Business 2016

## 클린 비즈니스 캠페인 III

### 자율 시정 범위

- 도테라의 제품 및 사업기회,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 카카오톡, 카카오토리를 포함한 SNS 홍보활동
  -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활동
  - 오프라인 판촉물, 전단지 홍보활동

### 상표무단도용

1. 회사명, 로고 또는 상표, 제품이미지의 무단 사용
2. 허위·과대 광고 위반 행위(문구, 임상사진, 리뷰 등의 불법 홍보)
3. 온라인 제품 판매 행위(개인온라인 사이트를 제외한 옥션, 지마켓, 중고나라 등)
4. 개인적인 홍보물 및 출판물 제작(명함·"IPC"포함)
5. 회사의 명예훼손
6. 위의 사항을 포함한 방침 및 절차 위반 사항 전부

### 허위 과장 또는 과대 광고의 범위

### 자율 시정기간 이후 위반에 대한 조치

#### 1차. 자율 시정기간

- 방법: 이메일 및 서면을 통한 통지
- 시정기간: 14일 이내

#### 2차. 권고 시정

- 방법: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통지
- 시정기간: 7일 이내
- IPC 답변서 제출 기간: 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3차. 결론 및 처분

- 방법: 서면 통지
- 처분
  - ㉠제품의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여, 보상플랜에서의 승급 등의 IPC 특권 중지
  - ㉡일정기간 동안 또는 IPC가 특정 조건 충족할 때까지 후원수당 또는 보너스 보류
  - ㉢IPC 계약 해지
  - ㉣법률이 허용하는 벌금 또는 기타 위약금 부과
  - ㉤부득이한 경우 법적 절차

2016년 05월 02일  
- 도테라코리아 유통강령부 -